

이사회 규정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26조의2 제②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 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 장)

- ① 이사회는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 ② 정관 제 26조의5 제②항 및 제③항에 따라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고 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의 순서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 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3개월에 1회 이상 본사에서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단, 이사회 의장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의장의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③항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①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 의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의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1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의 의결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8) 신주의 발행
- (9) 주식의 소각
- (10) 사채의 모집 (단, 법469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한 사채 제외)
- (11) 준비금의 자본전입
- (12) 전환사채의 발행
- (1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4)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1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16) 기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2.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 (1) 사업계획
- (2) 통상적인 상거래 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

- (4) 해외증권의 발행
- (5)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6)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 (7)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11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위원회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2조 (긴급집행)

-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거나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동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 13조 (위 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3조의 2 (자문위원회)

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3조의 3 (경영진)

- ① 정관 제26조의 9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 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경영진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로 구분하며 회장, 부회장, 사장 및 경영진 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로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이사의 직을 겸직할 수 있다.
-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이내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 ⑥ 경영진의 급여,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 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

제 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재임중 뿐만아니라 퇴임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 1. 이사 또는 주요주주
 -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 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사전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책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

- 1.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중요정책의 승인
- 2.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조직구조에 대한 승인
- 3. 회사내 재무보고 및 자산보호와 관련된 제반위험에 대한 이해
- 4.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신뢰성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지에 대한 확인
- 5.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제 17조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③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8조 (이사회 지원)

- ① 이사회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문에 간사 및 지원팀을 둘 수 있다.
- ② 사외이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③ 사외이사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문의 배경, 내용 및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0. 2)

본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30)

본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

이사회 규정 제 13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한다.

- 1) 당좌차월 한도 설정
⇒ 건별 자기자본의 20% 미만
- 2) 일반 운영자금, 시설자금 및 해외투자자금 차입
⇒ 건별 자기자본의 20% 미만
- 3)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 및 지급보증 한도설정
(D/A, D/P, USANCE, A/P BOND 등 제 BOND발행, L/C개설 등)
- 4) 외화표시 해외증권 발행 및 외환거래 (파생상품 등)
⇒ 건별 자기자본 10% 미만
- 5) 어음할인 또는 매각
- 6) 해외 자회사 및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지급보증, 담보제공 및 연장
⇒ 건별 자기자본의 5% 미만
기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지급보증, 담보제공 및 연장
⇒ 건별 자기자본의 3% 미만
- 7)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 건별 자기자본의 3% 미만
- 8) 인사관리에 관한 제규정
- 9) 경영진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출자회사 경영진 선임 등 포함)
- 10) 유형자산 취득, 처분
⇒ 건별 자기자본 3% 미만
- 11)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 건별 자기자본 3% 미만
-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규모가 50억원 미만의 거래

- 13)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서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규모가 50억원 미만의 거래
- 14) 공정거래법상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서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거래규모가 50억원 미만의 거래. 여기에서 자산은 12) 및 13)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을 말하며,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 포함.
- 15) 공정거래법에 의해 지정된 동일인(친족 포함)이 일정지분(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해외법인 제외)를 상대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한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50억원 미만의 거래
- 1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기타 법령 및 당사 정관, 이사회 규정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특별히 요하지 않는 회사의 일상 업무에 관련된 사항